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4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4.

발 의 자 : 윤건영 · 조계원 · 박용갑
한병도 · 박정현 · 신정훈
채현일 · 차지호 · 권칠승
위성곤 · 최혁진 · 윤종균
김성희 · 박지원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9조제1항).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분에 따라”를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”을 “경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”을 “경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”을 “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특별교부세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<u>구분</u> 에 따라 교부한다.	제9조(특별교부세의 교부) ① -- ----- <u>어느</u> <u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</u> -----.
1.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<u>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
2.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<u>경우: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</u>	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
3. 국가적 장려사업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, 지역 역점시책 또는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<u>경우: 특별교</u>	3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</u>

<u>부세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</u> <u>당하는 금액</u> 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